
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



전주교육대학교
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사항

1. 2024학년도 모집 시기 및 전형별 모집인원

모집 시기	전형유형	전형명		모집인원		
				정원 내	정원 외	계
수시	학생부위주(종합)	교직적성우수자		26	-	26
		지역인재선발		71	-	71
		고른 기회 전형 I	국가보훈대상자	5	-	5
			다문화가정자녀	2	-	2
		고른 기회 전형 II	농어촌학생	-	11	11
			기회균형선발	-	4	4
			장애인등 대상자	-	8	8
		계		104	23	127
		정시	수능위주	일반학생		181
고른 기회 전형 II	농어촌학생			-	수시모집 미충원시 선발함	-
	기회균형선발			-		-
	장애인등 대상자			-		-
계			181		181	
합계		285	23	308		

※ 전형별 복수지원 불가

※ 수시모집 정원 내 모집인원 미충원 시 정시모집 일반학생 전형으로 이월

1. 수시모집 전형별 세부사항

가. 학생부위주(종합) 전형

1) 교직적성우수자

가) 모집인원 : 26명

나) 지원자격
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다)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

-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2개 영역 평균) 합 12등급, 한국사 4등급

라) 전형방법

- 전형요소별 반영비율

선발방법 (단계별전형)	선발비율(%)	전형요소별 반영 비율(%)		전형총점
		서류	면접	
1단계	200	100	-	600
2단계	100	60	40	1,000

2) 지역인재선발

가) 모집인원 : 71명

나) 지원자격

- 전라북도 소재 정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고교 3년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
다)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

-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2개 영역 평균) 합 12등급, 한국사 4등급

라) 전형방법

- 전형요소별 반영비율

선발방법 (단계별전형)	선발비율(%)	전형요소별 반영 비율(%)		전형총점
		서류	면접	
1단계	200	100	-	600
2단계	100	60	40	1,000

3) 고른 기회 전형 I

가) 모집인원 : 국가보훈대상자 5명, 다문화가정자녀 2명

나) 지원자격

○ 국가보훈 대상자
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‘국가보훈대상자’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
- 보훈(지)청장이 발행하는 ‘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’ 발급대상자

○ 다문화가정자녀
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

다)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

- 미적용

선발방법 (단계별전형)	선발비율(%)	전형요소별 반영 비율(%)		전형총점
		서류	면접	
1단계	200	100	-	600
2단계	100	60	40	1,000

4) 고른 기회 전형 II

가) 모집인원 : 농어촌학생 11명, 기회균형선발 4명, 장애인등 대상자 8명

나) 지원자격

○ 농어촌학생

- 농·어촌지역(읍·면지역)에 소재하는 중·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전체를 이수한 졸업(예정)자로서, 중·고등학교 재학기간동안(6년) 반드시 본인과 부모가 농어촌지역(읍·면지역)에 거주한 자(사망, 이혼,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)
-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, 동일한 읍·면이 아니더라도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
- 부모·학생의 거주지는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·면이 아니더라도 가능, ‘특수목적고, 신활력지역(낙후지역),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

○ 기회균형선발
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(수급권자), 제2호(수급자), 제10호(차상위계층)에 의한 대상자
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○ 장애인등 대상자
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등록을 필하고, 장애인 등에 대학 특수교육법 제15조의 장애가 있는 자(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제외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(국가보훈처 등록)

다)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

- 미적용

라) 전형방법

- 전형요소별 반영비율

선발방법 (단계별전형)	선발비율(%)	전형요소별 반영 비율(%)		전형총점
		서류	면접	
1단계	200	100	-	600
2단계	100	60	40	1,000

2. 정시모집 전형별 세부사항

가. 수능위주 전형

1) 일반학생

가) 모집인원 : 181명

나) 지원자격
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다)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

- 미적용

라) 전형방법

- 전형요소별 반영비율

선발방법 (단계별전형)	선발비율(%)	전형요소별 반영 비율(%)		전형총점
		수능	면접	
1단계	200	100	-	900
2단계	100	90	10	1,000

●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

영역	국어	수학	영어	탐구
		가/나		사/과
반영방법	백분위	백분위	등급	백분위
반영비율	25%	25%	25%	25%

※ 가산점 부여 : 미적용

※ 수능 최저학력기준 : 미적용

※ 영어 등급별 점수화

등급	1	2	3	4	5	6	7	8	9
점수	225	202.5	180	157.5	112.5	90	67.5	45	0

● 면접·구술고사

면접자료	면접기준	면접방법
대학자체 면접 문제출제	교직원, 표현력	· 예비초등교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교양과 교 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·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구술 답변

2) 고른기회 전형Ⅱ(수시 해당 전형 미충원 시 선발)

나) 지원자격

○ 농어촌학생

- 농·어촌지역(읍·면지역)에 소재하는 중·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전체를 이수한 졸업(예정)자로서, 중·고등학교 재학기간동안(6년) 반드시 본인과 부모가 농어촌지역(읍·면지역)에 거주한 자(사망, 이혼,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)
-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, 동일한 읍·면이 아니더라도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
- 부모·학생의 거주지는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·면이 아니더라도 가능, '특수목적고, 신활력지역(낙후지역),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

○ 기회균형선발
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(수급권자), 제2호(수급자), 제10호(차상위계층)에 의한 대상자
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- 장애인등 대상자
 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등록을 필하고, 장애인 등에 대학 특수교육법 제15조의 장애가 있는 자(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제외)
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(국가보훈처 등록)

다)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미적용

- 전형요소별 반영비율

선발방법 (단계별전형)	선발비율(%)	전형요소별 반영 비율(%)		전형총점
		수능	면접	
1단계	200	100	-	900
2단계	100	90	10	1,000

◎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

과목	국어	수학	영어	탐구
		가/나		사/과
반영방법	백분위	백분위	등급	백분위
반영비율	25%	25%	25%	25%

※ 가산점 부여 : 미적용

※ 수능 최저학력기준 : 미적용

※ 영어 등급별 점수화

등급	1	2	3	4	5	6	7	8	9
점수	225	202.5	180	157.5	112.5	90	67.5	45	0

◎ 면접 · 구술고사

면접자료	면접기준	면접방법
대학자체 면접 문제출제	교직원, 표현력	· 예비초등교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교양과 교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·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구술 답변